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1. 조 례 명 :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ㅇ 학생 자살은 개인적·가정적·학교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,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ㅇ 이에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 심리부검 등 학생 자살사례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활용하도록 하고, 세종특별자치시, 경찰·소방기관, 의료기관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심리분석 결과를 학생 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 수립·시행에 활용(안 제5조의2)
나.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(안 제9조의2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0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 출 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hocandy@korea.kr

라. 문 의 처 : (044) 300-7313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학생 자살사례 분석결과의 활용) ① 교육감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등 학생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, 유가족 및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, 경찰관서, 소방관서, 의료

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학생 자살사례 분석결과의 활용) ① 교육감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등 학생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, 유가족 및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제6조(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	제6조(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<신 설>	제9조의2(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, 경찰관서, 소방관서, 의료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	등 관계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1조의2(심리부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,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·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2. 6. 10., 2025. 11. 11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6. 10.>

[본조신설 2017. 2. 8.]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 인 호

[붙임 3]

현 행 조 례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[시행 2026. 2. 27.] 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958호, 2026. 2. 27., 타법개정]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(학교안전과), 044-320-172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,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,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”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,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·육체적 건강의 보호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
3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
4.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
5.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6.2.27.>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<개정 2026.2.27.>

1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교육감 소속 공무원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교직원 역량 강화)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,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)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·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살시도학생·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<개정 2022.12.20.>

제10조(예산의 지원)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의 의무)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칙 <제2958호,2026.2.27>(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(교육청)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